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19일 23시 53분



# 목차

목차	2
태풍특보기준	3
경보단계 발령기준	3
태풍특보기준 세분(태풍경보 바람·비 3단계)	3
바람 1·2·3급	3
비 1·2·3급	3
NSC 태풍관련 위기경보 단계	4
바람 단계(3·2·1)별	4
태풍주의보(풍속14m/s 이상이 예상될 때)	4
바람 3급(풍속17~24m/s, 해상파고 4~6m)	5
바람 2급(풍속25 ~ 32m/s, 해상파고 6 ~ 14m)	5
바람 1급(풍속33m/s 이상, 해상파고 14m 이상)	6
비 단계(3·2·1)별	6
태풍주의보(12시간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)	7
비 3급(강수량이 100 ~ 249mm)	7
비 2급(강수량이 250~399mm)	8
비 1급(강수량이 400mm 이상)	8

## 경보단계 발령기준

관심(Blue)	주의(Yellow)	경계(Orange)	심각(Red)
태풍발발시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	태풍예비특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	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	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

## 태풍특보기준 세분(태풍경보 바람·비 3단계)

### 바람 1·2·3급

- 바람 1급
  - › 장대교량 및 고가도로내 차량 진입금지
  - › 아파트 등 대형·고층건물의 옥상 출입금지
  - › 대형간판 등 옥외시설물 주변 접근금지
- 바람 2급
  - › 불완전한 옥외외장재 낙하위험 경계
  - › 각종 선박의 안전결박 또는 고지대 이동 대피
  - › 고층건물 옥상, 교량 등 바람을 피할 수 없는 곳 접근금지
- 바람 3급
  - › 옥외 보행시 꺾인 잔가지 등의 낙하에 주의
  - › 농업시설은 지지목·받침목 설치 등 보호대책 강구
  - › 선박 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·어구 등은 안전지대로 이전

### 비 1·2·3급

- 비 1급
  - › 침수된 지하상가·건물 등의 출입금지
  - › 고압선·전신주·가로등·신호등 주변 접근금지
  - › 침수능경지내 물이 빠지기 전 농작물 보호 행위 금지
- 비 2급
  - › 산사태·절개지 등 붕괴위험지구 주변 접근금지
  - ›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은 영업중지 및 안전대피
  - › 침수예상 건물의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
- 비 3급
  - › 저지대 차량진입 금지 및 주차차량은 안전지대 이동 주차
  - › 침수로 인하여 막힌 하수도 등은 보수·보강
  - › 침수능경지내 물이 빠지기 전 농작물 보호 행위 금지

## NSC 태풍관련 위기경보 단계

- **심각(Red)**
  - › 초·중·고교 임시 휴교 및 직장·공공기관 임시 휴무 실시
  - › 여행객 또는 행락객들의 여가행위 자제 및 귀가
  - › 붕괴 또는 유실위험 제방·저수지·하천범람지 주변 접근금지
  - › 침수된 도로나 보도의 보행 절대금지
- **경계(Orange)**
  - › 건물 옥상·지붕 등의 낙하위험시설물 점검 및 결속과 접근금지
  - › 산사태 위험지구 내 접근금지 및 인접주민 즉시 대피
  - › 건물 내 침수발생시 영업중지 및 전기, 가스 등 차단 후 대피
- **주의(Yellow)**
  - › 차량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 계획시 취소
  - › 고속도로·해안도로 운행시 서행
  - › 지하공간의 침수대비 출입문 차폐 또는 마대 등 보강
- **관심(Blue)**
  - › 라디오·TV를 통한 태풍상황 경청
  - › 가족·이웃간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피요령 숙지
  - › 비상물품 준비 및 대피소·이동 대피로 확인

## 바람 단계(3·2·1)별

- **기본 행동요령**
  - ›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한 지역내 바람의 세기 파악 및 라디오·TV를 통한 태풍상황 경청
  - › 가족이 흩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만날 방법과 장소를 미리 지정
  - › 대피소 및 이동 대피로 확인 및 모를 경우 읍·면·동 공무원에게 즉시 문의
  - › 가스, 전기 등의 단절에 대비 비상물품(휴대용 가스용품, 양초 등) 준비 및 지역관할 가스·전력공사 비상연락처 점검
  - › 노후가옥, 담벼락, 가로수, 거목 등 전도·도괴 취약시설 주의 및 접근 금지
  - › 장애인, 고령자, 외국인 등 재해약자와 어린이는 외출금지
  - › 독거노인, 장애인 등 재해약자를 이웃하고 있는 주민은 긴급대피상황에 대비한 재해약자 대피계획을 세우고 여력이 없을시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연락
  - › 건물의 출입문, 창문 등 잠금장치 확인 및 차폐(집안에서는 창문에서 떨어진 곳에 머물 것)
  - › 대피시는 되도록 개인행동을 삼가고 담당공무원 및 이장 등의 안내에 따라 가족 및 이웃주민 등과 단체로 행동
  - › 대피시는 최소한 3일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생활용품 준비 (라디오, 손전등, 응급치료도구, 음식, 식수 등)

## 태풍주의보(풍속14m/s이상이 예상될 때)

- **공통**
  - › 건물 옥상의 빨래 등 미리 거두어 들이기
  - › 차량을 이용한 장거리 계획시 취소
  - › 설치 불안전 입간판 또는 함석판 등이 날릴 수 있으므로 제거 또는 결속
  - › 바람을 향해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므로 보행시 주의]
  - › 각종 공사장의 가시시설, 크레인, 비계, 웬스 등의 제거 및 결박
- **도시지역에서**
  - › 건물 밀집지역 대형·돌출간판 등 부착물의 고정
  - › 아파트 등 대형·고층건물의 유리창 탈락 등을 점검하고 출입문·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
  - ›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차단막 설치
- **농촌·산간지역에서**
  - › 소화기노후 노자로 조기 소화 - 비닐하우스 등 노리시설 비닐조끼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· 주택기둥간 등벽을 조기 주택 - 비닐하우스등 증설시설 조조조시

· 비닐하우스등 농림시설 보호조치

· 벼 쓰러짐 방지(4~6포기씩 묶어주기 작업)

· **해안지역에서**

· 항해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국민안전처에 긴급 타전하고 대피 준비

· 어망 부설중지 및 철거조치

· 선박출항의 엄격한 통제와 안전결박

· 해안·고지대 위험지역에 대한 경계강화 및 주민안전지대 대피 준비

· 해수욕장 폐쇄 및 가시시설 철거

· 철거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식 시설의 철거

· 해안도로 차량운행 자제

· 낚시객 등 피서객 안전대피

· 해안·항구 낙하위험시설 점검 및 임시철거

 **바람 3급(풍속17~24m/s, 해상파고 4~6m)**

· **공통**

· 건물 옥상 및 지붕의 적치물 등 낙하위험시설을 점검 및 제거

· 고속도로에서의 차량운전 서행

· 바람에 날린 물건으로 유리가 깨질 수 있으므로 창문 등 접근금지

· 옥외 보행시 꺾인 잔가지 등의 낙하에 주의

· 대형공사장 등에 설치된 가시시설내에서의 거주 자제

· **도시지역에서**

· 건물 밀집지역 대형·돌출간판 등 부착물의 고정 및 결박

· 아파트 등 대형·고층건물 유리창 테이핑 결박, 커튼·블라인드 등을 치고 창문부근 접근금지

· 고압선, 전신주, 가로등, 신호등 파손시 인근기관이나 한전에 즉시 연락

· **농촌·산간지역에서**

· 과수목 등은 지지목 설치와 방풍망으로 보호조치

· 농기계 및 가축시설물 안전 결박

· 비닐하우스, 인삼재배시설 등의 받침대 보강

· **해안지역에서**

· 컨테이너 크레인, 리프트 등의 운행중지 및 도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받침목이나 특별한 장치로 부착

· 어선 입출항 및 연안어객선 출항 금지

· 이전 가능한 증식시설 안전지대 이전 대피

· 해안가, 유원지 피서객은 옥내대피 또는 귀가

· 어로작업 중지 및 해상운행중인 선박은 인근 항내 즉시 대피 및 안전결박

· 선박 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, 어구등 안전지대로의 이전 대피

· 해수욕장 등 해안가 주변 접근금지

· 해안도로 차량운행 서행 및 안전지대 주차

 **바람 2급(풍속25 ~ 32m/s,해상파고 6 ~ 14m)**

· **공통**

· 건물 옥상·지붕의 낙하위험시설을 결속 및 접근금지

· 고속도로 운행차량은 안전지대 주차 및 대피

· 불안정한 옥외외장재가 날릴 수 있으므로 경계

· 옥외 보행이 어려우므로 보행을 자제하고 수목, 전신주의 전도에 주의

· 대형공사장 등에 설치된 가 시설물 등에서 안전한 건물로 대피

· **도시지역에서**

· 건물 밀집지역 대형간판 등 부착물 주변 통행 자제

· 아파트 등 대형·고층건물의 옥외시설물등 낙하발생위험시설 인접지역 접근금지

· 고층건물 옥상, 교량등 바람을 피할 수 없는 장소에는 접근금지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- 농촌·산간지역에서
  - › 과수목 낙과 대비 비닐이나 짚을 이용한 방지망 설치
  - › 농기계 및 가축의 안전지대 대피
  - › 비닐하우스, 인삼재배시설 등 취약시설 결박 및 결속
- 해안지역에서
  - › 컨테이너 크레인, 리프트 등의 결박
  - › 각종 선박의 안전결박 및 고지대 양육 대피
  - › 선박 출항 금지, 양육 대피 및 결박
  - › 대피선박은 고무타이어 등을 부착 타선박과 충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로프등으로 안전지대 결박
  - › 해안가 저지대 풍랑대비 안전지대 대피

## 바람 1급(풍속33m/s이상, 해상파고 14m이상)

- 공통
  - › 건물 옥상 출입금지
  - › 장대교량 및 고가도로내 차량 진입금지
  - › 옥외에서의 보행금지
  - › 수목, 전신주 등 주변 접근금지
  - › 대형공사장,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의 접근금지
- 도시지역에서
  - › 건물 밀집지역 대형간판 등 부착물 주변 접근금지
  - › 아파트 등 대형·고층건물내 거주자는 건물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
  - › 고압선, 전신주, 가로등, 신호등 주변 접근금지
- 농촌·산간지역에서
  - › 농작물 보호조치 강화
  - › 특용작물 농림시설 결박 및 보호조치 강화
- 해안지역에서
  - › 컨테이너 크레인, 리프트 등의 주변 접근금지
  - › 각종 선박의 안전결박 및 고지대 양육 대피 강화
  - › 선박 출항 금지, 양육 대피 및 결박 강화
  - › 해안가, 해수욕장 등 저지대 풍랑 위험지역 접근금지
  - › 해안주변 차량운행 전면금지

## 비 단계(3·2·1)별

- 기본행동요령
  - ›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한 지역내 비의 예상량 파악 및 라디오·TV를 통한 태풍상황 경청
  - › 침수에 대비 지하상가 등 주변에 모래주머니 등 쌓기(집 담주변에 모래주머니 쌓을 경우 건물기초를 약하게 하므로 담 주변은 자제)
  - › 밀려온 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고 옥내외 전기설비의 누전, 방전 등으로 인한 감전사에 유의
  - › 가족이 흩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만날 방법과 장소를 미리 지정
  - › 대피소 및 이동 대피로 확인 및 모를 경우 읍·면·동 공무원에게 즉시 문의(대피로 두절시 대비 우회도로 확인)
  - › 가스, 전기 등의 단절에 대비 비상용품(휴대용 가스용품, 양초 등) 준비 및 지역관할 가스·전력공사 비상연락처 점검
  - › 노후가옥, 담벼락 등 전도 주의 및 접근 금지, 침수도로구간 접근 금지
  - › 장애인, 고령자, 외국인 등 재해약자와 어린이는 외출금지
  - › 독거노인, 장애인 등 재해약자를 이웃하고 있는 주민은 긴급대피상황에 대비한 재해약자 대피계획을 세우고 여력이 없을시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연락
  - › 대피시는 되도록 개인행동을 삼가고 담당공무원 및 이상 등의 안내에 따라 가족 및 이웃주민 등과 단체로 행동
  - › 대피시는 최소한 3일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생활용품 준비(라디오, 손전등, 응급치료도구, 음식, 식수 등)

## 태풍주의보(12시간강우량이 80mm이상 예상)

- **공통**
  - › 저지대·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
  - › 고속도로상 차량의 고속운행 자제
  - › 지면에 물웅덩이가 생길수 있으므로 일반도로차량운행시 주의
  - › 맨홀 역류로 인한 물 분출에 주의
  - › 천동·번개 등 낙뢰시 가로수 주변은 피하고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
  - › 하천변 주차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
- **도시지역에서**
  - › 지하공간의 침수대비 출입문 차폐등 보강
  - › 대형공사장, 위험축대 등 시설물 안전점검
  - › 가로등, 신호등 및 고압전선 등의 주변 보행금지
  - › 인근 하수도시설의 배수상태 점검·정비
- **농촌·산간지역에서**
  - › 용배수로, 양수기 및 수문조작 점검
  - › 소하천 및 간이 취입보 등의 정비 보강
  - ›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주민대피 준비
  - › 농기계 등 안전조치 및 가축 시설물 점검
- **해안지역에서**
  - › 항해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국민안전처에 긴급 타전하고 대피 준비
  - › 어망 부설중지 및 철거조치
  - › 선박출항의 엄격한 통제와 안전결박
  - › 해수욕장 폐쇄 및 가시설물 철거
  - › 철거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식 시설의 철거
  - › 낚시객 및 피서객은 안전지대 대피
  - › 해안도로 차량운행시 서행 및 주의
  - ›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강화 및 임시철거

## 비 3급(강수량이 100 ~ 249mm)

- **공통**
  - › 고속도로에서의 차량운전 서행
  - › 저지대 도로 차량 운행금지 및 안전지대 주차
  - › 세월교, 소규모교량 등 차량운행 주의
  - › 맨홀주변 보행금지
  - › 국·공립공원 등 입산 금지
  - › 천동·번개 등 낙뢰시 가로수 주변은 피하고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
  - › 하천변 주차금지
- **도시지역에서**
  - ›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자제 및 대피 준비
  - › 대형공사장, 위험축대 등 보수 보강
  - › 가로등, 신호등 및 고압전선 주변 접근금지
  - › 침수로 인하여 막힌 하수도 등은 보수·보강
- **농촌·산간지역에서**
  - › 물빠기, 배수로정비, 양금제거 등 배수로 정비
  - › 논둑 보수 및 물꼬조정
  - ›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위험지구 경계강화
  - › 산간계곡이나 하천변 야영객은 신속히 대피
- **해안지역에서**
  - › 해안저지대·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
  - › 이전가능한 증식시설 안전지대 이전 대피
  - › 해안가, 유원지 피서객은 옥내대피 또는 귀가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- ▶ 어로작업 중지 및 해상운행중인 선박은 인근 항내 즉시 대피 및 안전결박
- ▶ 선박 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, 어구 등 안전지대로의 이전 대피
- ▶ 해수욕장 등 해안가 주변 접근금지
- ▶ 해안도로 차량운행 서행 및 안전지대 주차

## 비 2급(강수량이 250~399mm)

- **공통**
  - ▶ 고속도로 차량 운행금지
  - ▶ 침수된 세월교, 소규모교량 등 차량운행 금지
  - ▶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
  - ▶ 국·공립공원 등 입산금지
  - ▶ 천동·번개 등 낙뢰시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
  - ▶ 하천변 주변 차량진입 금지 및 물구경 금지
- **도시지역에서**
  - ▶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영업중지 및 대피
  - ▶ 대형공사장,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
  - ▶ 가로등, 신호등 및 고압전선 주변 접근금지
  - ▶ 도심 시가지내 외출 자제
  - ▶ 아파트·대형건물의 지하 침수예상시에는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
- **농촌·산간지역에서**
  - ▶ 농작물 보호조치를 위한 외부활동 자제
  - ▶ 논둑, 제방 등의 붕괴 위험한 곳은 응급 손질
  - ▶ 산사태 위험지구 접근금지
  - ▶ 수확한 농작물은 안전지대 이전 철저
- **해안지역에서**
  - ▶ 각종 선박 출항 금지, 양육 대피 및 결박
  - ▶ 대피선박은 고무타이어 등을 부착 타선박과 충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로프등으로 안전지대 결박
  - ▶ 해수욕장 등 해안가, 방파제, 방조제 주변 접근금지
  - ▶ 해안도로 차량운행 금지
  - ▶ 해안저지대·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및 연안 저지대 주민 경계강화

## 비 1급(강수량이 400mm 이상)

- **공통**
  - ▶ 고속도로, 장대교량, 고가도로상 차량 운행금지
  - ▶ 침수된 교량 주변 차량 접근금지
  - ▶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
  - ▶ 국·공립공원 등 입산금지
  - ▶ 천동·번개 등 낙뢰시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
  - ▶ 하천변 주변 보행 금지
- **도시지역에서**
  - ▶ 침수된 지하상가 건물 등의 출입금지
  - ▶ 대형공사장,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
  - ▶ 가로등, 신호등 및 고압전선 주변 접근금지
  - ▶ 도심 시가지내 외출 금지
  - ▶ 아파트·대형건물의 지하 침수시 엘리베이터 이용금지
- **농촌·산간지역에서**
  - ▶ 침수된 지역내 물이 빠지기전 농작물 보호를 위한 일체의 행위금지
  - ▶ 수해상습지, 고립지 등 위험지역에 위치한 가축은 안전지대 긴급 이동
  - ▶ 산사태 주변 인접 주택거주자는 즉시 대피
- **해안지역에서**



**해안지구별지**

- > 각종 선박 출항 금지, 양육 대피 및 결박 강화
- > 연안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또는 안전지대 대피
- > 해안 인접 상가 영업행위 금지
- > 해안주변 차량운행 전면금지
- > 해안가 인접 주택, 저지대 주민 긴급 대피

---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# 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